

# FTA EXPERTS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부가가치기준 재점검을 통한  
FTA 활용 확대방안**

**박세영** | 관세법인 더블유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 방안**

**정환우** | KOTRA 중국조사담당관

## FTA EXPERTS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부가가치기준 재점검을 통한 FTA 활용 확대방안



박세영

관세법인 더블유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코로나 장기화 속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 매일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물류운임이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급격해지고 있어 수출 물품 원재료비도 변동되고 있는 바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우리가 부가가치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재점검하여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지난 달, 우리나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하였고 이는 앞으로 FTA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제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의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과 더불어 부가가치기준 활용 가능성을 재점검하여 수출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I. 들어가며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신음이 계속 되는 가운데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며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의 시작이었던 올해 상반기, 수출입 전체 교역규모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0.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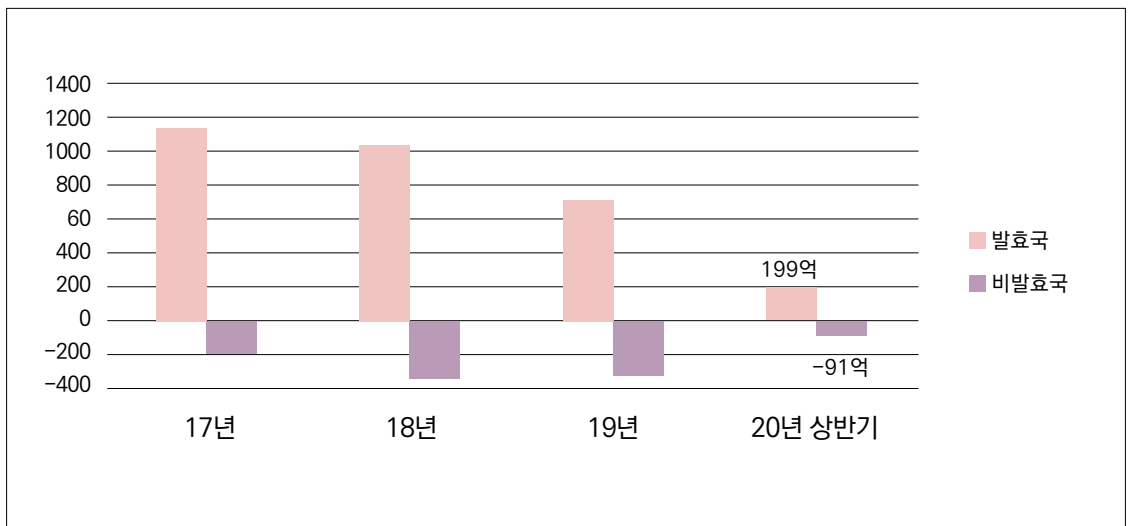
이 중 FTA 비발효국과의 교역은 17.4% 감소로 크게 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6.8% 감소에 그쳤다.

더욱이, FTA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는 2016년도 부터 계속 적자인 이래 올해 상반기도 91억 달러 적자였으나, FTA 협정국과의 무역수지는 코로나가 강타한 올해 상반기에도 199억 달러 흑자를 유지<sup>1)</sup> 하였다.

FTA 활용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발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FTA 발효 여부에 따른 무역수지]

[단위: 천 달러, %]



자료 : 관세청

1) 관세청 보도자료 “올해 상반기 FTA 체결국과 199억 달러 무역흑자”(2020.07.30)

FTA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원산지판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부가가치기준은 관세평가협정 및 회계

원칙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준으로서 타 기준 대비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부가가치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을 위해 부가가치기준의 유형을 다시 정리해보고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부가가치기준의 이해

### 1. 부가가치기준이란

FTA 협정에서의 “부가가치기준”이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즉,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Value Added)를 고려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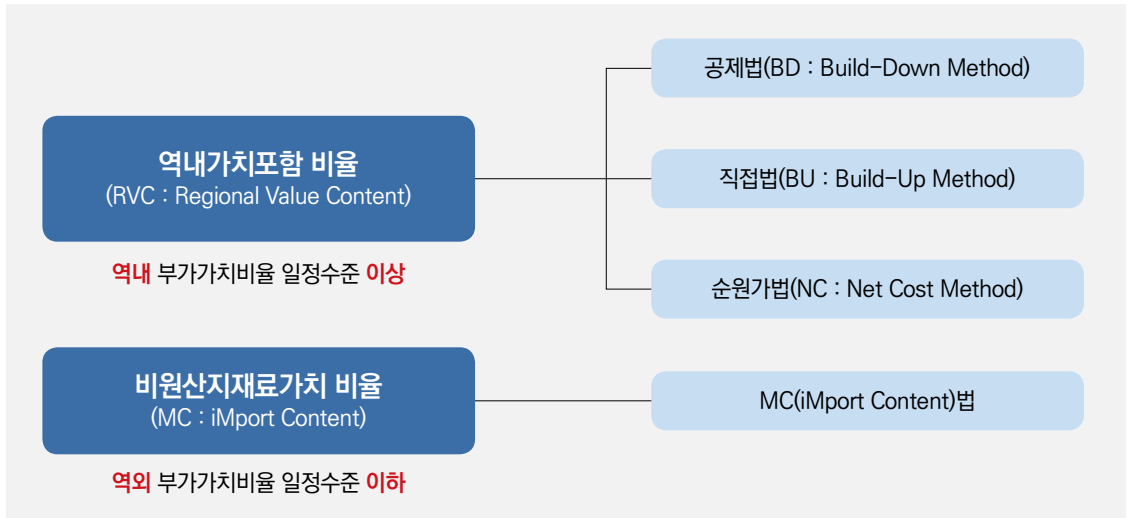


### 2. 부가가치기준 유형

#### 1) 부가가치비율 유형

부가가치기준의 유형은 크게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기준과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MC; value of iMport Contents)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RVC기준이란, FTA 영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MC 기준은 FTA 영역 밖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 3)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RVC기준은 그 계산방법에 따라 직접법(BU; Build-Up Method),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부가가치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당해 물품 조정가격<sup>2)</sup>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한 부분을 역내가치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text{공제법(BD)} = \frac{\text{조정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조정가격(FOB)}} \times 100$$

#### ② 직접법(BU; Build-Up Method)

당해 물품 조정가격에서 원산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text{직접법(BU)} = \frac{\text{원산지재료비(VOM)}}{\text{조정가격(FOB)}} \times 100$$

#### ③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제품의 순원가(Net cost)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한 부분을 역내가치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text{순원가법(NC)} = \frac{\text{물품의 순원가(NC)} - \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물품의 순원가(NC)}} \times 100$$

2) 조정가격(Adjusted Value) : FOB가격으로 조정된 상품의 거래가격

④ MC법(value of iMport Contents)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비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을 비원산지 부가가치로 보는 방법

$$MC(\text{비원산지재료비율})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공장도 거래가격(EXW)}} \times 100$$

4)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유형

①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

부가가치기준은 각 FTA 협정마다 그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어 올바른 적용이 필요하다.

[FTA 협정 별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 비교]

미국/콜롬비아	칠레/페루/호주/ 뉴질랜드/베트남/중미	EU/EFTA/터키	캐나다	아세안/싱가포르/ 인도/중국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일부)	직접법 공제법	MC	MC 직접법	공제법

② FTA 협정 별 부가가치기준 예시

부가가치기준은 품목별 기준이 하나만 규정되어 있는지 또는 선택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단일기준, 선택기준, 결합기준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이 단일기준 또는 결합기준인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원산지국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제3926.90호(기타 플라스틱 제품) 협정 별 부가가치기준 예시]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Preference Criterion)	약자표기
단일기준	한-EU 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50
선택기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 40
결합기준	한-인도 CEPA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 BD 35

## 5) 부가가치기준 활용전략 사례

### ① 판정대상물품

물품명	홍삼차(1pack)	HS CODE	2106.90
적용 협정	한-베트남 FTA	FOB 가격	4,000원
원산지결정기준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p>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p> <p>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p> <p>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제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p>		

### ② 원산지 판정

#### [홍삼차 FTA-BOM<sup>3)</sup>]

NO.	원재료명	세 번	소요량	단가	가격소계	원산지
1	홍삼농축액	1302.19	12g	170	2,040	한국
2	프로폴리스 강화 꿀	2106.90	10g	50	500	미상
3	정제수	2201.90	100g	0.1	10	미상
4	포장재(PE)	3923.21	1PC	50	50	미상
5	박스	4819.10	1PC	20	20	미상
역내산(원산지) 재료비 합계					2,040	
비역내산(비원산지) 재료비 합계					580	
합계					2,620	

#### 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비원산지재료인 프로폴리스로 강화된 꿀(제2106.90호)과 완제품인 홍삼차의 HS 4단위가 동일하므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 나.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한-베트남 FTA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설명을 돕기 위한 임의구성으로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 공제법(BD) 선택 시의 부가가치비율 계산 예시

$$\begin{aligned} \text{BD}(\%) &= \frac{\text{FOB 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FOB가격}} \times 100 \\ &= \frac{4,000 - 580}{4,000} \times 100 = 85.5\% \end{aligned}$$

따라서, 한-베트남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이라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므로 '한국산' 증명이 가능하게 된다.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기준을 검토하여 충족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FTA 적용이 가능함

### III.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주의사항

#### 1. 원산지 입증서류 구비

한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었다하더라도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매처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는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하여야 하며, 부가가치비율 계산 시에도 비원산지재료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2. 서류의 일치성 확보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와 제조공정도는 원산지판정을 위한 근거자료이다.

따라서 BOM 상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수량 및 금액은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및 원재료 구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와 일치하여야 한다.

#### 3. FTA BOM 작성 시 모든 원재료 기재 필요

FTA BOM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까지 실제 투입된 모든 원재료가 구성되어있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구성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매용 포장재료·용기(예 : 플라스틱 병, CAP, 라벨 등)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sup>4)</sup>

즉, 소매용 포장재료·용기에 대하여 역내산 원산지 입증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비원산지재료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4) 한-캐나다 FTA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도 소매용포장재료·용기를 제외하고 FTA BOM을 구성하여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함



#### 4. 버퍼(Buffer) 설정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원산지의 지위 또한 변동되는 경우가 다소 존재한다.

안정적인 부가가치기준 적용을 위하여는 가격에 미치는 대내외적 영향을 고려하여 버퍼(Buffer)율을 설정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sup>5)</sup>

### IV. 마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반적 FTA 활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60.3%로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 85% 대비 낮은 수치이다.<sup>6)</sup>

특히, 인건비 등 직접재료비 외 비용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극에도 불구하고 ‘미충족’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다소 존재한다.

세번변경기준 대비 부가가치기준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다보니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지난 달, 우리나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하였고 이는 앞으로 FTA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제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의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과 더불어 부가가치기준 활용 가능성을 재점검하여 수출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5) 통상 5~10% 정도로 설정하나, 업체별/품목별 상황에 따라 상이함

6) 2019년 기준(산업통상자원부)

## FTA EXPERTS

#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 방안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 1. 중국, 코로나19 전파위복의 드문 사례

코로나19가 중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켜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기술이나 생산 시스템의 전환이나 혁신은 어떤 계기를 맞았을 때 폭발적인 진전을 이루곤 한다. 지리상의 발견이나 전쟁, 거대한 전염병 등이다.

한 세기에 올까 말까 한 팬데믹인 코로나19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1년 가량을 지나면서 분명해 진 사실은 비대면 활동의 확산이며, 그 기반인 디지털 혁신과 활용 확대다. 이를 앞장서서 증명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은 국가이다. 이 덕분에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코로나19에 더욱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대면 활동을 통해 퍼지는 코로나19의 특성상 경제적 충격은 중국의 오프라인 분야에 집중되었다.

'20년 1~4월 중국 전체 산업의 GDP는 27.4%나 하락했다. 반면에 비대면 산업의 인프라인 통신·전자 설비 제조업은 15.0%나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 제공 서비스)는 13.2%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거래 형태별로도 소비재 전체 판매는 16.2% 감소했지만 온라인 판매는 8.6%나 증가했다.

이처럼 상반되는 경제적 충격에 주목해 중국내외에서는 이미 연초부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 온라인 활동이 확산되면서 ICT 비즈니스가 확대되리라라는 예측이 널리 확산되어 왔다.

글로벌 IT 전문 연구기관인 IDC는 4월 말 '20년 중국에서 15조 위안(약 2,580조원) 규모 ICT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회를 이끈 분야로는 △정부 관리 스마트화·현대화, △新SOC 기반 도시화, △디지털 기반 의료 건강 시스템 확산, △비접촉 서비스 발전, △글로벌 공급체인(GVC) 다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이 꼽혔다.

코로나19 훨씬 전부터 디지털 전환은 중국의 핵심 발전전략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만큼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디지털 전환 전략을 추진해 온 국가는 거의 없었다.

이미 5년 전('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과제로 차세대 정보통신이 지정되었고, 같은 해 여름 발표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디지털 전환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점이었으며, 2년 뒤인 2017년 여름 발표한 <중국 정보화 전략>은 요즘에 와서야 일반 용어로 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었다.

분야별·지방별 맞춤형 정책도 병행되었다. 주무 부처인 공업정보화부를 중심으로 빅데이터('16년), AI('17년) 등 분야별 정책이 이어졌고, 리커창 총리 주도하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 국가적 사회적 여건 마련책이라 할 수 있는 <대중창업, 만중창신>('17년)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편 14억 인구의 방대한 규모를 고려한 지방별 디지털 혁신정책 추진이 적극 추진된다.

'17년 중순 구이저우성(貴州省)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필두로 '20년 현재 거의 모든 성 및 직할시가 각자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포, 추진하고 있었다.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에 의해 새롭게 채택된 정책이 아니었다. 코로나19는 중국이 오래전부터 강력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에 기름을 부어 주었다.

코로나19 시대에 중국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 2.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정책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빠르고 강력했다. 우선 대면 산업과 소비 충격에 맞서 온라인 기반 소비 촉진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코로나19 폭발 직후인 '20년 2월 28일 중국정부는 23개 부처 공동으로 <소비 확대·제고와 국내시장 강화 의견>을 발효했다.

이 <의견>에서 제시한 19개 과제중 9개가 ICT 기반 신소비 관련 분야였다.

△국경간(跨境)전자상거래, 온라인수입박람회, △스마트 관광·여행·쇼핑, △농업 전자상거래 연계 강화), △차세대 전자상거래(5G, '인터넷 플러스+') 등이다. 핵심 특징은 디지털과 소비 촉진의 결합이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겨냥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본격 추진되었다.

굵직한 것만 해도 "ICT를 이용한 방역 및 조업재개 지원"조치(2.19일), "공업 인터넷(5G)를 이용한 산업 업그레이드" 조치(3월 20일), "5G 가속 발전"(3.24일), "이동 IoT 네트워크 응용" 조치(5.7일), "빅데이터 발전" 정책(5.13일) 등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3월 초에서 5월 말로 연기해 개최한 '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사업

보고>에서 종합 정책으로 발표한다.

동 <보고>에서는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가 전염병 대처에 큰 역할을 했음을 적극 평가하고 디지털 전환 촉진 방침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분야 통합 주관 부처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8개 분야별 목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정책시스템 구축, △실물 경제와 디지털의 융합, △디지털 산업 확대, △디지털 요소이동 촉진, △디지털 정부 건설, △국제협력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20년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신형 인프라 확충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경기부양)과 기반 제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연초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데 이어 5월 말 전인대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신형 SOC 투자에 3.75조 위안(약 626조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게 된다.

주요 대상 분야는 차세대 정보네트워크 구축, 5G 응용 프로그램 추진, 충전설비 확충, 신에너지차 연구 및 보급 확대 등이다.

5G는 '20년 신형 SOC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투자 대상이었다. 중국 정부는 '20년 5월까지 중국 내 5G 기지국 25만개 건설을 완료한데 이어 연말까지 6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지급시(地級市) 이상 도시를 커버한다는 것이다. 5G 활용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20년 5월 기준 5G 혁신 응용 프로젝트 400여개, '5G+공업 인터넷' 프로젝트도 600개 이상 진행되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25년이 되면 중국내 5G 네트워크 투자는 누계 1.2조억 위안(약 200조 원),

상-하류 체인 및 응용투자액은 3.5조 위안(약 58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5G 스마트폰 신규 출시 모델 수는 '19년만 해도 35개에 불과했으나 '20년 1~11월 이미 199개에 이르고 있다.

2천 위안(약 33만원) 이하의 저가 5G 폰도 여러 모델 출시되고 있다.(중국정보통신연구원) 5G 단말기 출고량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9년 13.8백만대였던 5G 출고량은 '20년 1~11월 이미 1억 4천 5백여 만대로 10.5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 3. 코로나19 이후 중국 산업과 시장의 디지털 재편

이미 추진해 오던 디지털 전환 정책 위에 코로나19에 따른 전환 가속화로 중국의 모든 산업과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산업/업종별 비즈니스가 '디지털 플러스(+)'화, 즉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제조업이 디지털(ICT) 기반으로 전환 및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의 진정한 효과는 디지털 기반 신형 비즈니스, 중국식 표현으로는 '신업태(新業態)\*'의 등장이다.

디지털 기반 상품과 서비스의 융합, 기존에 없던 온라인 서비스의 등장이다.

\* ICT에 기반해 기존 업종 혁신이나 업종간 결합을 통해 나타난 비즈니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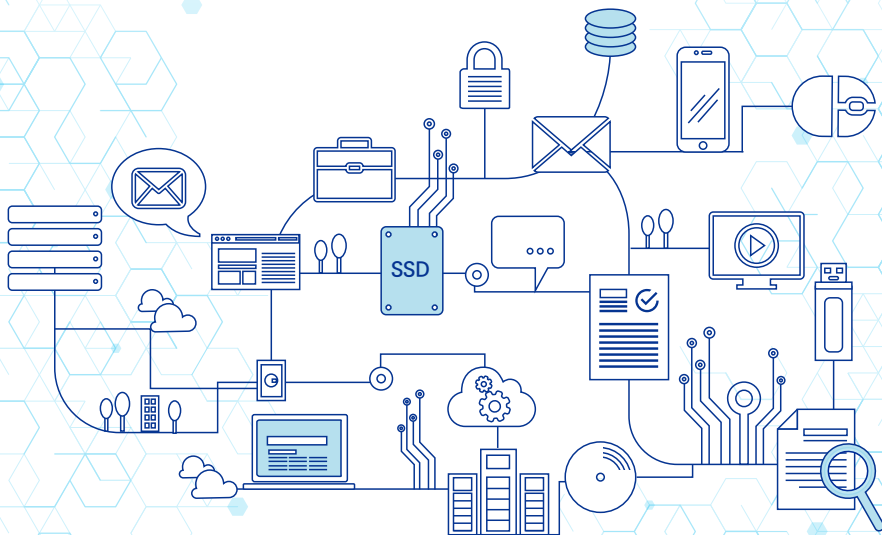
원격농업·관광농업·농촌 전자상거래(농업), 스마트 팩토리(제조업), 전자상거래·'신유통(O2O)'(도소매업), 네트워크형 숙박체인, 데이터 거래(정보통신), 핀테크(금융), 원격 교육 및 원격의료 등 이미 수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모든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기존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시장별 디지털 전환>

기존업종	디지털 전환	신산업·신형비즈니스	내용
농업·어업	⇒ (모바일(5G), 빅데이터, AI, IoT)	스마트농업 농촌전자상거래	원격·ICT + 농업, 관광농업 농산물·농촌 + 온라인상거래
제 조		무인·원격(로봇)생산	스마트 팩토리
도 소 매		전자상거래, '신유통'(O2O) 국경간(CBT)전자상거래	모바일(5G) + 빅데이터 + 도소매 전자상거래 + Cross border
요식숙박		네트워크형 숙박체인	ICT + 숙박
금 융		핀테크	모바일(5G, 인터넷) + 금융
교 육		원격 교육	모바일(5G, 인터넷) + 교육
의 료		원격 의료	모바일(5G, 인터넷) + 의료
여가·게임		AR·VR	모바일(5G) + 게임·여행
문화·영화		AR·VR	모바일(5G) + 콘텐츠
사업지원		재택 근무	모바일(5G) + 오피스



## 4. 시사점과 대응 방안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의 기회이자 리스크이다. 신형 SOC, 기존 산업 업그레이드, '신업태' 등 중국 산업과 시장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분야 특유의 진입 장벽,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특히 이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미중 강대국 경쟁 등은 리스크이다.

중국의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업종별 중국 진출 전략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디지털 경제 전후방 연관 업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등 부품과 첨단 소재, ICT 제조장비등 중국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다.

막대한 시장 규모와 ICT 기술로 무장한 중국의 빅데이터와 데이터시장, AI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경제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발상을 바꾸면 된다. 중국의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중국 내수시장은 물론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심지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의료, 교육, 콘텐츠, 게임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국의 디지털 환경과

결합시키면 중국시장에서 남다른 실적을 거둘 수도 있다.

기술 경쟁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대중국 스타트업 진출, 공동 투자와 개발, 기술 무역(수출), 대중국 소싱(조달)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관련 한중 협력을 촉진할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관세·비관세 장벽 이외 규범이나 협력을 통한 환경과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교류 활성화와 개방,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 사안별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또 신생 및 변화중인 분야임을 고려, 이슈에 따라 분야별·지방별 시범협력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